

다중이용시설의 보험대책

– 화재보험을 중심으로 –



박 영 수

보험개발원

보험2본부 부장

목 차

1. 머리말
2. 화재보험의 담보위험과 가격구조의 현황
3. 개선방향
4. 맺는 말

1. 머리말

경기도 화성 씨랜드, 인천 호프집, 성남 단란주점 등 소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련의 화재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인하여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문제의 기저에 안전의식의 부재, 방재시설의 미비, 안전검사의 소홀, 적정보상의 미흡 등 여러 가지 원인을 지적할 수 있으나, 문제해결의 요체는 “사고의 철저한 예방과 사고 후의 적정한 보상”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계에서 제도의 개선 또는 법률의 개정을 통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지만 민간보험제도권에서는 기능상 화재보험 분야에서 보험의 가용성(affordability) 즉, 보험가입율을 확대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상품을 보완한다면 다중이용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왜냐하면 현 화재보험은 보상기능뿐 아니라 특수건물 안전점검 수행에 의한 예방기능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프라 활용을 전제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의 개선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2. 화재보험의 담보위험과 가격구조의 현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상품의 가용성 부족의 원인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화재보험의 담보위험(coverage)과 보험요율의 결정구조(rating system) 등 상품효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 화재보험의 담보위험

화재보험은 가입의 강제여부에 따라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되어 있고 담보위험도 큰 차이가 있다. 의무보험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 의거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임의보험은 비특수건물로서 각각의 담보위험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건물의 기본담보위험

- 화재
- 폭발·파열(주택물건의 경우)
- 풍수재
-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담보)
 - 사망 : 1인당 3,000만원
 - 부상 및 후유장해 : 1인당 상해·후유장해등급별로 최고 3,000만원

(2) 비특수건물의 기본담보위험

- 화재

○ 폭발·파열(주택물건의 경우)

특수건물은 화재(주택은 폭발·파열 포함)로 인한 인명피해를 신배책특약에 의거 의무적으로 담보하는 반면, 비특수건물은 화재보험계약만으로는 인명피해를 담보할 수 없는 상품구조의 특성이 있다. 즉,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은 비특수건물이 대부분이므로 인명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는 타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약자로서는 보험가입상의 불편함이 상존하고, 특수건물의 경우 신배책특약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타 의무보험이나 사회적 요구에 비해 적절한 보상측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나. 화재보험의 요율 결정구조

보험료는 수지상등(收支相等)의 원칙에 의거 계약물건의 위험정도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되어야 한다. 이 원칙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보험가입 성 측면에서는 보험사업자가 보험인수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또한 요율은 계약자로 하여금 사고예방에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방재시



설이 잘 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저렴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화재보험 요율구조는 등급요율(class rate)로서 보험료 산출에 이용되는 위험평가요소는 기본요율 및 할인요율부분을 합하여 5개 요소에 불과하다.

□ 소규모 물건의 위험평가요소

- ① 건물구조상태 (기본요율에 반영)
- ② 건물의 용도 (기본요율에 반영)
- ③ 소화설비상태 (할인요율에 반영)
- ④ 내장재상태 (할인요율에 반영)
- ⑤ 공지거리상태 (할인요율에 반영)

현 화재보험료 산출에 이용되는 소규모물건에 대한 위험평가요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하나 다중이용시설은 물건의 규모에 관계없이 화재발생·확대위험요인이 다양하고 방재시설이 취약하며 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위험평가요소를 통한 보험료의 산정과 방재활동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3. 개선방향

가. 상품부문

(1) 인명피해담보위험의 개선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인명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최소한 특수건물의 신배책특약과 동일한 수준의 특약개발을 통한 상품체계를 보완함으로써 계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품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특수건물 신배책 보상금 수준의 현실화

특수건물 신배책특약의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타 보험 수준으로 현 보상금

을 현실화하여 사망의 경우 6,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나. 특수건물부문

(1)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특수건물 지정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을 특수건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면 보험가입의 문제, 방재관리의 문제는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이는 화재보험법의 입법목적에 부합되는 일일 것이다.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용도 및 규모를 다음 조건으로 할 때 대상건물건수는 약 21,000여 건 정도로 추정된다.

- 용도 및 규모조건 : 지하층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소재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음식점, 노래방, 비디오방 또는 무도장으로서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건물
- 추정건물건수 : 21,67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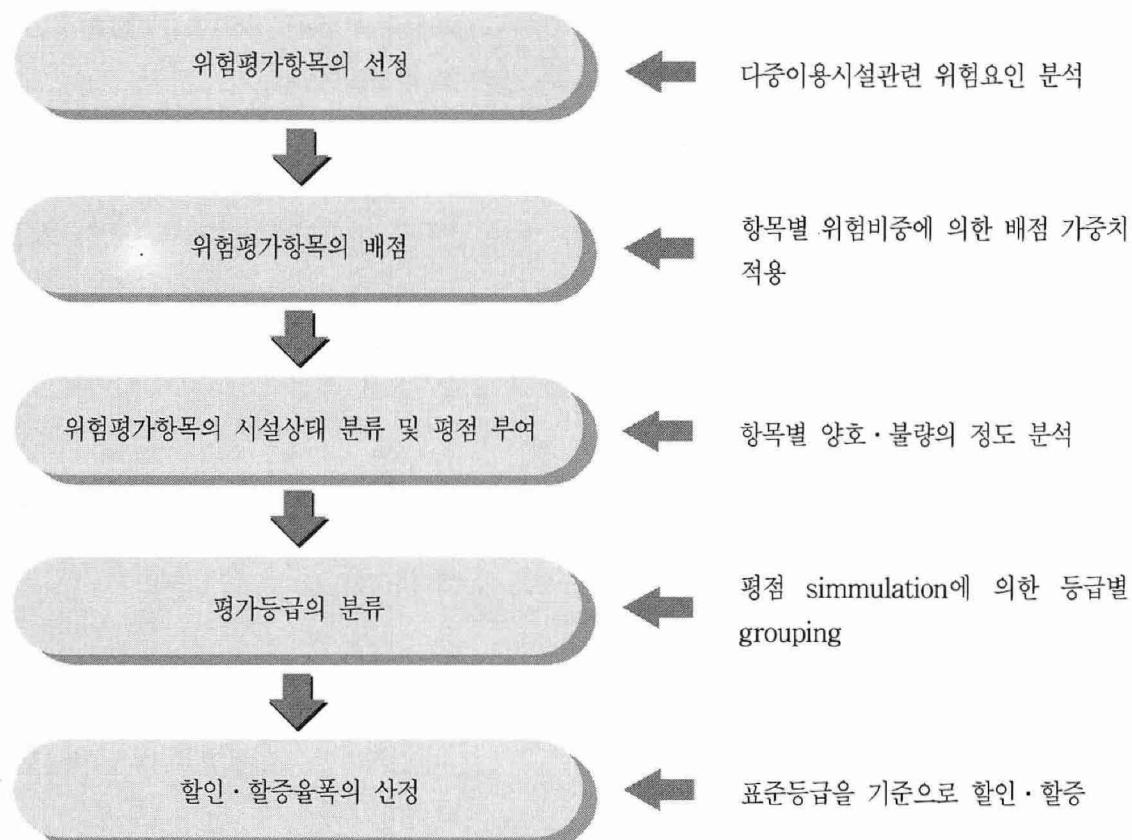
다중이용시설의 특수건물 지정에 있어서 그 용도와 규모의 한계 확정은 특수건물 확대에 따라 수반되는 소요비용 증가의 해결을 위한 현행 특수건물대상 및 안전점검주기의 조정, 요율조정 등 선행과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다. 요율부문

(1) 성과요율체계로의 개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평가를 정확히 하여 계약물건의 위험도에 따라 요율을 산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행 요율은 전술하였듯이 계약물건에 대한 위험평가요소가 단순한 등급요율체계(class rate system)이므로 위험의 적정차등화를 기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위험평가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요율에 반영할 수 있는 성과요율(Merit-Demerit rate system)로 전환



(그림) 할인·할증시스템 개발의 기본개요 및 고려점

한다면 요율의 적정차등화에 의한 공정성을 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방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기할 수 있을 것이다.

(2) 성과요율 도입방안

성과요율에서의 보험료산출은 등급요율을 기준요율(key rate)로 하여 이 기준요율을 위험평가성적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함으로써 산출된다. 성과요율 도입에 있어서 기준요율은 현행 등급요율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할인·할증의 tool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이 같은 성과요율은 일반적으로 현장점검에 의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만 하므로 등급요율에 비해 소요비용이 증가되고 이는 곧 계약자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위험평가항목의 선정이나 평가기준이 평가대상물건의 규모·특성에 꼭 알맞도록 경제성과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설계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맺는 말

다중이용시설의 위험성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고 소방, 건축, 보험 등 여러 분야에서 그 해결을 위해 이해와 인식을 같이 할 때이다.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소중한 인명과 재산손실을 미연에 예방하고 사고 후의 적정한 보상을 위해 화재보험은 지속적인 상품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상품의 개선, 특수건물의 대상범위 확대, 요율체계의 개선을 통해 보험의 가용성을 높인다면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화재보험의 사회적 역할은 그만큼 증대될 것이다. ⑥